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).
-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및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의 안전·승인 기준, 표시기준, 표시·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).

II. 검토의견

1.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(안 제10조)

현행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에서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,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, 안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개정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“환경부장관”임을 명시하고, 유효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 규정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한편,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 외에 적용례 등 다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, 안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법 적용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도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